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62
----------	------

발의연월일 : 2020년 7월 일

발 의 자 : 김은영 의원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겸직신고 내용을 명확히 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안 제9조의2제2항)
- 나. 겸직신고내역 확인 및 검증절차 강화(안 제9조의2제4항)
- 다. 겸직신고 안내(안 제9조의2제6항)
 - 법정기한 내(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겸직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등록 시 1차로 안내하고,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2차 안내
- 라. 겸직신고 내용의 현행화(안 제9조의2제7항)
 - 연 1회 의원에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
- 마. 겸직현황 공개(안 제9조의2제8항)
 - 연 1회 이상 겸직신고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바.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15조)
- 사.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 점검(안 제16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 · 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35조

6. 예산수반사항 :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0년 5월 6일 ~ 5월 26일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16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한 내용이 발견될 시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의장은 의원등록 시와 의원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의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에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하남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남시 및” 을 “하남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하남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하남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하남시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 ②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제16조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 을 “별지 제3호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의장은 연 1회 제9조의2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제9조의2제2항 관련)

하남시의회의원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하남시의회의원

(인)

하남시의회의장 귀하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의2(검직신고) ① (생략)</p> <p>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p> <p>③ (생략)</p> <p>④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9조의2(검직신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검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16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검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한 내용이 발견될 시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의장은 의원등록 시와 의원 입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의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p> <p>⑦ 의장은 검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에게 검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p> <p>⑧ 의장은 검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하남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p>

	<p><u>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u></p>
<p>제15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u>하남시</u>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생 략)</p> <p>제1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생 략)</p> <p>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u>별지 제2호 서식에</u>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5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 <u>하남시</u> 및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p> <p><u>1. 하남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u></p> <p><u>2. 하남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u></p> <p><u>3. 하남시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 받고 있는 기관·단체</u></p> <p>②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 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1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별지 제3호 서식</u>----- -----.</p> <p>③ 의장은 연 1회 <u>제9조의2의</u> <u>결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u> 하는 등 <u>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u>하여야 한다.</p>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 4. 1.>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 4. 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 4. 1.>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 4. 1.>